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http://www.namwon.go.kr)

제14호 2021. 4. 16(금)

선 람	기관의 장

##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1-49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준공 고시 ----- 1

##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1-843호 보상계획열람공고 ----- 2

○ 남원시 공고 제2021-867호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4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1-49호

##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준공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농로)공사에 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21년 4월 9일

1. 사업의 종류 : 소규모 공공시설(농로) 공사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소규모 공공시설(농로) 공사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산118-2번지의 4필지
    - 사업의 규모 : 3,848m<sup>2</sup>(L=871m, B=4.0m)
    - 사업기간 : 2019. 5. ~ 2021. 4
3. 공사시행자의 명칭
  - 가. 성 명 : 전용균(전주시 완산구 견훤로 112-78번지)
4. 관계 도면 : 실음생략
5. 편입 토지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시	면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8필지		3,848	3,848					
1	남원	대산	신계	산118-10	임	2,449	2,449	남원시				
2	남원	대산	신계	산118-13	임	124	124	남원시				
3	남원	대산	신계	산118-16	임	16	16	남원시				
4	남원	대산	신계	산128-1	임	454	454	남원시				
5	남원	대산	신계	산128-5	임	51	51	남원시				
6	남원	대산	신계	산118-11	임	178	178	남원시				
7	남원	대산	신계	산118-5	임	450	450	남원시				
8	남원	대산	신계	산118-8	임	126	126	남원시				

남원시 공고 제2021 - 843호

## 보 상 계 획 열 략 공 고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갈촌~신덕)』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2일

남 원 시 장

1.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2. 사 업 명 :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갈촌~신덕)
3. 사업개요
  - 가. 위 치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92-80번지 일원
  - 나.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L=0.8km, B=8m
  - 다. 사업기간 : 2023년 완료
4. 보상대상 : 불입 편입 토지조서와 같음
5.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1. 4. 22. ~ 2021. 5. 7.(15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건설과 도로계 (☎ 063-620-6535 / 6533)
7.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8. 보상시기 : 보상계획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 9.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방법 :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 입금
- 나. 보상가격의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남원시청 건설과 하천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
- ① 보상협의(계약체결시) ⇒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
  - ② 보상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및 수용

## 10. 기타사항

- 가.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나.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액 내역은 개별 통지 합니다.
-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보상계획 및 보상물건은 추후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제외)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설과 도로계(☎ 063-620-6535/6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2021 - 867호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16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지원신청, 이의신청, 지원중지, 환수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9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826), FAX(063-620-6711)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063-620-6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21.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주민복지과장

###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 라. 지원신청, 이의신청, 지원중지, 환수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긴급복지지원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4. . ~ 2021. 4.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규제예비심사 : 완료(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및 자생단체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질병, 불의의 사고, 실업,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남원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이뤄지도록 하며,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해산(解産)·장제(葬祭)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는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노동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등)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조** **현행 전라북도 조례****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시행 2018. 11.19.]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4582호, 2018. 11. 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소득주민 지원)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해산·장제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는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5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8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결정
2.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